

2022년 거창군의정비심의회위원회 위원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강철우	전 군의원	
2	심순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	박종한	거창군새마을회	
4	조춘선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	
5	강신훈	거창군 주민자치회	
6	이치원	거창군청년회의소	
7	이상재	매일신문	
8	김덕환	거창군이장협의회	
9	안영길	경남지방법무사회 거창지부	
10	전권화	거창교육지원청	

2022년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2022년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장 소	거창군청 상황실
일 시	2022년 10월 4일(화) 14:00 ~
참 석 자	○○○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10명
심의내용	<p>□ 개회선언과 위원 위촉장 수여, 최연장자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위원들의 동의로 최연장자를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함</p> <p>□ ○○○ 임시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위원장을 맡게된 ○○○위원입니다. ○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실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p>□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p>□ ○○○ 임시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p>< 전 위원 동의 ></p> <p>□ ○○○ 임시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 위원장

-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럼 회의자료에 의거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담당주사께서는 심의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자료 설명>

□ ○○○ 위원장

- 기획담당주사의 심의자료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음>

□ ○○○ 위원장

- 안건 상정 이전에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의정비 인상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된 지방의원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전업의원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전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최대 의결기관이 되었고, 공무원 수준으로 공직자윤리위 적용받습니다.
둘째, 의회에서 채용하는 정책지원관 보수보다 의원의 보수가 적습니다. 셋째 의회예산 부족한데 집행부는 50%정도 증가하였고, 공무원 6급 및 5급 보수 수준에도 못미치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정 생활 대다수 민원 만나는데 소요됩니다. 지난 12년간 동결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 등 반영하여 의정비를 인상해 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다섯째 타시군과 비교입니다. 부산 기장 15%, 중구 12%, 영도 8%, 홍천군 32.8% 등 타시군 인상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 위원

- 공무원 6급, 5급 보수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급은 경력이 20년 정도 공무원이고, 5급은 25~30년 정도 경력인데 군의원 경력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심의 자체가 세비를 올리는 목적이 아니고 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했으면 삭감도 해야 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이상, 또는 15%, 30% 올렸을 때 그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 인상은 군민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앞 군의원들과 비교해서 완전 잘하더라 이럴 때 인상가능하지 타시군 단순 비교해서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시 한 의원의 발언으로 전국적인 자질 논란이 있는 바 오히려 삭감을 하고 다음 해 잘하면 인상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10개 군을 봐도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인상하게 되면 전국 파급문제나 도내 균형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

- 이제 시작이라 다 심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기획담당주사

- 도내 결정된 곳이 많이 없습니다.

□ ○○○ 위원

- 너무 많이 인상하면 군민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타 시군 형평성 맞추어야 할 것이고, 재정자립도도 도에서 끌지로 보입니다. 인상은 부담이 됩니다.

2022년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 위원

- 재정자립도를 보면 도내 7위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근무년수와 초선 군의원 등의 급여 비교는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초선 의원 임기 4년과 사회 초년생을 비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인데 초선 의원이 1년 안에 예산 관련 등 전체적 파악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기초의원이 명예직으로 출발한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 ○○○ 위원

-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여 공무원 보수인상을 만큼만 하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도 있으니 약간의 인상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 위원

- 의원이 되신 분들은 경제적 기반과 군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 위원

-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물가 상승 요인이 있으니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거창군 예산이 많지 않아 보이고 다른 시군 것을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적합해보입니다.

2022년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 위원장

- 위원님들 시간내서 참석해주셨는데, 이게 4년간을 이끌어갈 금액이라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전국의 지자체와 경남도내 결정되는 사항 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 ○○○ 위원, ○○○ 위원 동의>

□ ○○○ 위원장

- 자치분권이 올해부터 시행하여 국회의원 임금도 동일, 도 의회도 동일, 기초 의회가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자주도를 보면 창원, 김해와 맞먹는데 의정비는 훨씬 적습니다. 한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 기획담당주사

- 의정비 결정 시 금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특정직급의 공무원 보수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2년을 하고 2년을 하는 것은 안 됩니까?

□ 기획담당주사

- 규정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 ○○○ 위원

- 4년차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방에 재량권이 있다면 군의원도 초선, 재선, 삼선을 나눠서 실질적 업무량에 차이를 두어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주사

- 합리적인 부분이지만 규정상 그런 부분이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 위원

-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오늘 결정했으면 합니다.

2022년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 위원

- ○○○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중대한 결정이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했으면 합니다.

□ ○○○ 위원장

- 전국, 경상남도 등 타 시군 등 인상률 고려하여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 ○○○ 위원

- 코로나 시기가 3년이 있었고 의원 스스로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을 제시하든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위원

-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 위원 처음 발언처럼 타시군 추이 지켜보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

- 인상을 하든 삭감을 하든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여야 하니, 집행부에서는 전국 결정되는 데이터를 다음 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10. 14. 이내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 위원장

- 먼저 의안번호 제1안, ‘회의 공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 위원

○ 비공개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전 위원 동의 >

□ ○○○ 위원장

○ 그러면 비공개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전 위원 동의 >

□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안 ‘회의 공개의 건’은 총 10명 의원님들 중 10명이 찬성하였으므로, 비공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 다음은 제3안 ‘제2차 회의 개최일자 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차기 회의 일자는 회의장 문제 등 기획담당에서 일정을 결정하여 알려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전 위원 동의 >

□ ○○○ 위원장

○ 전 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기획담당에서 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